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5일

서울특별시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| 구분    | 자치구  |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(km <sup>2</sup> ) | 허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   | 22개구 | 59개 법정동                     | 11.11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특별시 | 강동구  | 둔촌동, 천호동                    | 0.20                 | 지<br>목<br>「<br>도<br>로<br>」<br>한<br>정 |
|       | 송파구  | 풍납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동작구  | 노량진동, 사당동, 상도동              | 0.35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관악구  | 봉천동, 신림동                    | 0.64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금천구  | 시흥동, 독산동                    | 0.62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구로구  | 고척동, 구로동, 개봉동               | 0.69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양천구  | 목동, 신월동                     | 0.52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강서구  | 화곡동, 등촌동, 방화동, 공항동          | 1.38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마포구  | 대흥동, 용강동, 성산동, 망원동, 합정동, 중동 | 0.74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서대문구 | 천연동, 옥천동, 홍제동, 현저동          | 0.1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용산구  | 원효로4가, 산천동, 서계동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중구   | 신당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종로구  | 구기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은평구  | 불광동, 대조동                    | 0.39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도봉구  | 쌍문동, 방학동, 창동                | 0.58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강북구  | 번동, 수유동                     | 0.82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동대문구 | 답십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| 0.08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광진구  | 자양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8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노원구  | 상계동, 월계동                    | 0.69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성북구  | 석관동, 종암동, 정릉동, 돈암동          | 0.30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중랑구  | 면목동, 중화동, 상봉동, 망우동, 묵동      | 1.66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성동구  | 마장동, 사근동, 행당동, 송정동, 금호동1가   | 0.23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허가대상 도로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으로 함.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| 용 도 지 역 |      | 면 적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|
| 도시지역    | 주거지역 | 6㎡ 초과  |
|         | 상업지역 | 15㎡ 초과 |
|         | 공업지역 | 15㎡ 초과 |
|         | 녹지지역 | 20㎡ 초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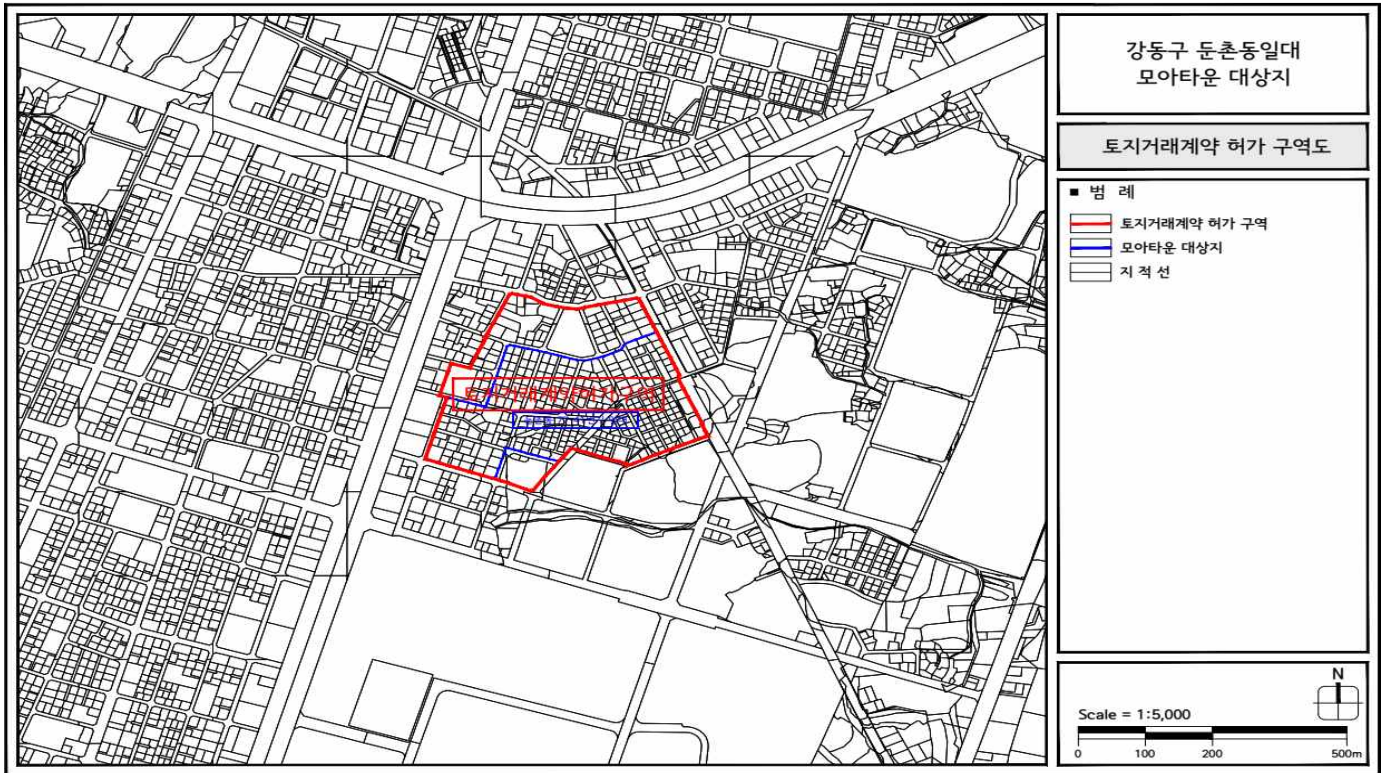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: 붙임1 참조

※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, 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.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: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○ 강동구 둔촌동 일대



○ 강동구 천호동 일대

